고소장

고소인

성명: qa

주민등록번호: a

주소: w 전화번호: e

피고소인

성명(닉네임): e

전화번호: r

고소취지

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,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법적사실

피고소인은 e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서, e(이하 '본 중고거래 대상물')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고소인에게 정상적인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.

사실 피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물건이 없거나 아예 물건이 없어서 돈을 받더라도 정상 적인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.

고소이유

- 1. 상기 본인은 피고소인과 e에 e 사이트의 판매글을 보고 알게 되어 사이트 내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.
- 2. 피고소인은 중고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나 아예 물건이 없어서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, 마치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글을 올리고 고소인에게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.

- 3. 고소인은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피고소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소인의 계좌 (-)로 현금 e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소인으로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.
- 4.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본 중고거래 대상물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 e 받아 위 피해금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

결론

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고, 이로 인한 고소인의 재산적/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,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 - 증거자료 1. 위 사건 판매 게시글 캡쳐본 등

е

위 고소인 qq (서명 또는 인)

w 귀중